

17. 불가리아(Bulgaria)

1.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24년
- 현행법 : 1999년(사회보험) 개정; 2000년(사회보험) 시행; 2000년(연금) 개정

2. 제도형태

- 사회보험 및 강제개인계좌, 사회부조제도
 - ※ 2015년 8월 1일부로 1959년 이후 태어난 근로자들은 정년 전 5년까지 2층 개인계좌제도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음.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우 자동으로 1층 부과방식 사회보험제도에만 가입되며, 2층 제도에는 임의가입 가능

3. 적용대상

- 사회보험제도 : 가입자, 자영자 (농부 포함)
- 개인계좌제도
 - 당연적용 :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직했으며 사회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 - 임의가입 : 2014년 12월 31일 이후에 취직한 자
- 사회부조제도 : 불가리아 거주자

4. 자원조달

- 가입자
 - 사회보험제도
 - 사회보험제도에만 가입한 경우 적용소득의 8.78%
 - 사회보험제도 + 개인계좌제도 가입자 : 적용소득의 6.58%
 - 보험금 산출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510 leva
 - 보험금 산출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2,600 leva
 - 개인계좌제도 : 적용소득의 2.2%
 - 보험금 산출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510 leva
 - 보험금 산출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2,600 leva
 - 사회부조제도 : 해당 없음

○ 자영자

- 사회보험제도
 - 1960년 1월 1일 이전 출생 : 신고소득의 19.8%
 - 1959년 12월 31일 이후 출생 : 신고소득의 14.8%
 - 보험금 산출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510 leva
 - 보험금 산출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2,600 leva
- 개인계좌제도 : 신고소득의 5%
 - 보험금 산출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510 leva
 - 보험금 산출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2,600 leva
- 사회부조제도 : 해당 없음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제도
 - 사회보험제도에만 가입한 경우 : 적용소득의 11.02%
 - 사회보험제도 + 개인계좌제도 가입자 : 적용소득의 8.22%
 - 보험금 산출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510 leva
 - 보험금 산출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2,600 leva
- 개인계좌제도 : 적용소득의 2.8%
 - 보험금 산출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510 leva
 - 보험금 산출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2,600 leva
- 사회부조제도 : 해당 없음

○ 정 부

- 사회보험제도 : 결손액 부담; 사용자로서 납부
- 개인계좌제도 : 해당 없음; 사용자로서 납부
- 사회부조제도 : 전액

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연금

- 사회보험제도
 - 남성 : 64세 1개월(2029년까지 매년 1개월씩 상향되어 65세로 조정예정)
 - 최소가입기간 : 38년 6개월(2027년까지 매년 2개월씩 상향 조정하여 최종 40년으로 조정 예정)
 - 여성 : 61세 2개월(2037년까지 매년 3개월씩 상향되어 65세로 조정예정)
 - 최소가입기간 : 35년 6개월(2027년까지 매년 2개월씩 상향 조정하여 최종 37년으로 조정 예정)
 - 납부하지 않은 기간 최대 5년까지 납부 가능

- 부분연금 :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인 66세 2개월(2023년까지 매년 2개월씩 상향되어 57세로 조정)
- 조기연금 : 완전연금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정년보다 최대 1년 일찍 지급 가능
- 연기연금 : 가능(연령제한 없음)
- 급여의 해외지급 가능
- 개인계좌
 - 사회보험 노령연금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 가능
 - 조기연금 : 가입자의 직업에 따라 조기연금 수급 가능
 - 상호협정에 따라 급여의 해외지급 가능
- 사회부조제도(소득조사) : 70세(독신인 경우 65세)
 - 소득조사 : 지난 12개월 동안 가구 총소득이 월 최저보장소득 × 가구 인원의 12배를 초과하지 않았어야 함 (월 최저 보장소득은 75 leva)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근로능력을 50%이상 상실하고 최소가입기간 요건이 충족된 자
 - 연령에 따라 최소가입기간 요건이 다름
(20세~24세 : 1년 이상, 25~30세 : 3년 이상, 31세 이상 : 5년 이상)
 - 20세 미만이거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최소가입기간 요건 없음
 - 전문 건강 의학 위원회(Ministry of Health Medical Expert Commissions)가 근로능력 상실정도를 평가
 - 해외지급 가능
- 장애사회연금(사회부조)
 - 근로능력을 71% 이상 상실한 16세 이상인 자에게 지급
 - 전문 건강 의학 위원회가 근로능력 상실정도를 평가

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최소 가입기간 요건 없음
 - 수급 가능한 유족
 - 18세미만의 자녀(군인이나 학생은 26세,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)
 - 퇴직연령의 5년 이내(장애인인 경우 그 전에)로 있는 생존하는 배우자
 - 그들 자신의 권리로 연금을 수급 받지 못하는 정상 퇴직연령 이상인 부모(군복무 중에 사망한 가입자의 부모에게는 연령제한 규정 없음)
 - 급여의 해외지급 가능

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• 노령연금(사회보험)

- 가입기간 1년당 소득기준의 1.169%
- 소득기준 : 국가 월 평균소득에 가입자 월 평균소득을 나눈 값에 국가 월 평균 납부보험료* 곱한 값

* 국가 월 평균 납부보험료는 연금이 지급되기 전 12개월간의 월 평균 보험료임

- 연금 상,하한액은 각각 200 leva, 910 leva
- 부분연금 : 최저 월 노령연금의 85% 지급됨
- 조기연금 : 조기 수령 1개월 당 0.4% 감액 (정년 기준)
- 연기연금 : 연기 수령 1년 당 4% 증액 (정년 기준)
- 연금조정 : 최저 연금액은 법에 의하여 매년 조정됨

• 개인계좌

- 급여액은 가입자의 개인 계좌 적립금과 기대여명에 기초하여 산정
- 조기연금 : 노령연금 산정방식과 동일

• 노령사회연금(소득조사) : 월 120.98 leva

○ 장애연금

• 장애연금(사회보험)

- 보험료 납부기간, 과세소득, 가입자의 연령(퇴직연령 미만인 자의 경우), 근로 능력평가에 기초하여 지급
- 지급액 : 가입기간 1년당 소득기준의 1.169% X 근로능력상실도

· 근로능력상실도가 90% 이상인 경우 0.9, 71%~90%인 경우 0.7, 71% 미만인 경우 0.5

- 가입연수는 부분 가입연수에 비례하여 조정됨
- 소득기준 : 국가 월 평균소득에 가입자 월 평균소득을 나눈 값에 국가 월 평균 납부보험료* 곱한 값

* 국가 월 평균 납부보험료는 연금이 지급되기 전 12개월간의 월 평균 보험료임

- 최저장애연금액은 근로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최저노령연금액의 85% ~ 125%임
- 산재 혹은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연금은 최소 일반 질병에 대한 장애연금액에 상응한 금액이 지급됨
- 연금 상·하한액은 각각 230 leva, 910 leva

• 장애사회연금 (소득조사)

- 근로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노령사회연금(120.98 leva)의 일정비율로 산정
- 지급액 : 가입기간 1년당 소득기준의 1.169% X 근로능력상실도

- 근로능력상실도가 90% 이상인 경우 0.9, 71%~90%인 경우 0.7, 71% 미만인 경우 0.5

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사망자가 수급했거나 수급권이 있는 경우, 유족의 수의 따라 지급됨
 - 유족이 1인인 경우 가입자 연금액의 50%, 2인인 경우 75%, 3인 이상인 경우 100% 지급. 연금 수급 가능자 모두에게 균분 지급.
 - 부모를 모두 잃은 고아는 사망한 부모의 연금 총액을 받음
 - 유족 1인당 최저 연금월액은 최저 노령연금월액의 75%
 - 최저노령연금 : 월 200 leva

7. 관리운영기관

○ 사회보험

- 노동사회정책부(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olicy)
 - <http://www.mlsp.government.bg>
 -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관련 국가 정책을 발전 및 협력, 시행하는 책임기관
- 국가사회보장청(National Social Security Institute)
 - <http://www.nssi.bg>
 - 정부, 사용자,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 감독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며 사회보험 제도 관리
- 국세청(National Revenue Agency)
 - <http://www.nra.bg>
 - 사회보험료 징수 및 사회보험제도에 할당된 보험료를 국가사회보장청에 배부

○ 강제개인계좌

- 금융감독위원회(Financial Supervision Commission)
 - <http://www.fsc.bg>
 - 연금 기금에 대한 인·허가 ·감독 및 강제개인계좌제도 규제
- 국세청(National Revenue Agency)
 - <http://www.nra.bg>
 - 사회보험료 징수 및 강제개인계좌로 할당된 보험료의 일부를 각 연금보험 회사에 배분
- 개인계좌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계좌와 연금액 지불을 직접 관리함

○ 사회부조

- 노동사회정책부(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olicy)
 - <http://www.mlsp.government.bg>
 - 국가사회부조정책 담당

<2018년 ISSA 자료>